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8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8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(98. 9. 19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(자치 12200-1252, 98. 6. 23)이 시달됨에 따라
- 21세기 본격 자치화, 정보화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구조정

구 분	실·국	과	사업소	계(담당)	비 고
현 행	7	62	13	259	
조 정	6	47	12	249	
증 감	△1	△15	△1	△10	

- 부구청장제 및 동사무장제 폐지
- 의회 전문위원실 1개 폐지
- 「계」 제도 폐지 → 분장사무 재조정
- 주요개편내용

<국 단위>

- 통·폐합
 - 기획실 + 총무국 → 행정지원국
 - 시민복지국 + 환경국 → 복지환경국
- 신설
 - 세무국 신설
- 폐지(1국, 1사업소)
 - 환경국, 공영개발사업소
- 명칭변경
 - 재정경제국 → 지역경제국
 - 상수도사업소 → 상하수도사업소

<과 단위>

- 통·폐합
 - 녹지과 + 공원관리사업소 → 녹지공원관리사업소
 - 산업과 + 농촌지도소 → 농산유통사업소
 - 구 시민과 + 구 지적과 → 구 시민봉사과
- 신설
 - 국제통상과, 부과1과, 부과2과, 징수과
 -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
- 폐지
 - 국제협력담당관실, 기술담당관실, 청소과, 재활용과, 구 민방위재난관리과, 구 세무과, 구 징수과
- 명칭변경
 - 기획담당관실 → 정책기획실
 - 공보담당관실 → 공보실
 - 환경사업소 → 맑은물사업소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에는 세무사업소로 하자고 하였는데 왜 세무국으로 하였는지 ○ 행정지원국안에 회계과가 들어간 이유는 ○ 정책기획실·공보실·감사실을 담당관으로 하면 어떤지 ○ 정책기획실을 부시장 산하에 두는 이유는 ○ 세무국에 부과1과와 부과2과를 합치면 안 되는지 ○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,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, 맑은물사업소를 하수정화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고친다면 어떤지 ○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 계속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칙을 개정할 경우 인력을 많이 배치하여야 될 것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무관계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사무이므로 세무국이라 칭하였음 ○ 재정경제국안에 회계과가 있었는데 세무국이 독립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들어가게 되었음 ○ 담당관 위에는 국장이 있으나 실장 위에는 국장급이 없어 어휘상 실장이 좋다고 봄 ○ 부시장 직속 산하에 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○ 부과1과는 도세, 부과2과는 시세를 맡고 있어도 업무량이 많은데 두 개 과를 합치면 너무 많은 업무량임 ○ 좋은 명칭이라 생각됨 ○ 참고하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기구조정안에서 세무사업소가 세무국으로 변경되어 당초 총무복지위원회 결정사항과는 다르지만 사업이 아니라 행정사무라는 것에 이의 제기는 더 이상 없었으며
- 전산정보과라는 명칭은 중앙단위에서도 정보통신부라 부르고 있는 시점에 정보통신과로 수정 하자는 안에 전원 찬성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30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21

제 출 자 : 총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전산이란 용어는 6, 70년대에 쓰던 용어들이로서 현시대는 정보라는 용어가 합당하여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라고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전산정보과를 → 정보통신과로 (안 제8조제1항)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8조(행정지원국)제1항중 "전산정보과"를 "정보통신과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행정지원국)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, 민방 위재난관리과, 회계과, 전산정보과를 둔다	제8조(행정지원국) ①..... 정보통신과를 둔다
②.....	②.....
1.	1.
2.	2.
3.	3.
4.	4.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시장) ①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.

②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, 시장 산하 소속행정기관·하부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기구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, 행정지원국, 지역경제국, 세무국, 복지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두며 감사실, 정책기획실, 공보실, 읍부즈만은 부시장 직속기구로 한다.

제4조(감사실) 감사실은 감사 및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정책기획실) 정책기획실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6조(공보실) 공보실은 시정홍보 계획 수립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7조(읍부즈만) 읍부즈만은 제출된 고충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시정감시 및 제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분장한다.

제8조(행정지원국)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, 민방위재난관리과, 회계과, 정보통신과를 둔다.

②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문서·복무·인사·시정시책·선거·직제·국민운동 업무에 관한 사항
2. 민방위·재난관리·안전지도에 관한 사항
3. 경리·계약·재산관리·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행정전산·통신·통계에 관한 사항

제9조(지역경제국) ①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, 국제통상과, 기업지원과를 둔다.

②지역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경제안정·활성화 대책과 노정·유통에 관한 사항
2. 국제교류협력·통상·외자유치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 지도육성·공장설립에 관한 사항

제10조(세무국) ①세무국에 세정과, 부과1과, 부과2과, 징수과를 둔다.

②세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·조정

- 2.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
- 3. 지방세 세무조사
- 4.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
- 5. 세외수입의 과징 및 지방세입 조정·통제

제11조(복지환경국) ①복지환경국에 시민복지과, 여성복지과, 문화체육과, 환경위생과를 둔다.

②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민원행정처리·서민생활보호대책·청소년 업무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- 2. 여성복지·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- 3.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- 4. 환경·위생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2조(건설교통국)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, 도로과, 교통행정과, 건축과를 둔다.

②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
- 3.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
- 4. 공동주택·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

제13조(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) ①국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둔다.

②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,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,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,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